

鋼船構造規程과 鋼船規則에 關한 對比 研究

高允燮

Comparison between the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and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Still Ship, Rok

Koh Youn-Sup

目 次

- | | |
|------------------|-----------------------|
| 1. 序 言 | (ii) 部材치수 計算 |
| 2. 船体 各 部材치수의 對比 | 3. 對比結果 考慮되어야 할 問題点 등 |
| (i) 對比 方法 | 4. 結 言 |

Abstract

Most steel ships expect warships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for Steel Ship Construction" or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Steel of the Korea Register of Shipping".

The choice between these two depends upon the free will of the ship owner, but the it is customary to follow the rules of the Korea Register of shipping when the ships are insured, while Passenger boats are required to be built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for Steel Ship" Construction". And in fact some other kinds of ship are being constructed according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for Steel Ship".

When a ship is constructed, if we compare two scantling calculations applied to the two regulations respectively, we have, as a result the difference of scantling calculations. And if the difference of the hull weight of a ship is larg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scantling calculations, the effects on the construction cost or the dead weight a ship could be serious.

In this paper, the author compares each scantling calculation, selecting several example ships and applying the two regulations to each example ship, and points out unreasonable points and investigates the possibl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two regulations.

1. 序 言

船舶은 海事法典 船舶安全法에 依해 建造하도록 되어 있다.

船舶安全法 第6條(製造検査)에서는 다음과 같은 檢査를 要求하고 있다. 길이 24m以上的 船舶製造는(總噸數가 5噸未滿이고 機關을 設置하지 아니한 船舶이거나 構造로써 運轉되는 船舶을 除外) 同法 第2條에 關한 船舶施設 및 同法 第3條에서의 滿載吃水線에 關하여 船舶製造에 着手한때 부터 政府 船舶検査官에 依해 製造検査를 受檢토록 되어 있다.

同法 第7條의 3에서는 第5條에 關한 船舶의 檢査 및 第6條의 船舶의 製造検査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해서 第8條의 規定에 依해 設立된 船級協會로 하여금 代行케 되어 있다. 即 第8條(船級協會) 大統領令으로 設立한 韓國의 船級協會의 檢査를 받고 船級의 登錄을 行한 船舶으로서 旅客船이 아닌 것은 그의 船級을 가진동안 第2條 第1號 내지 第5號 (① 船体, ② 機關, ③ 帆裝, ④ 排水施設, ⑤ 操舵, 繫船과 揚錨의 設備), 第10號 내지 第12號(⑩ 危險物 其他 特殊貨物의 積付設備, ⑪ 荷役 其他 作業設備, ⑫ 電氣設備)에 揭記한 事項과 滿載吃水線에 關하여 海運官廳의 檢査를 받고 이에 合格한 것으로 看做한다.

따라서 船舶検査는 船舶安全法에 依해 旅客船을 除外한 船舶은 政府検査나 船級協會検査中 어느 한쪽의 檢査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다. 어느 規程의 檢査를 받아야 하는 問題는 船主의 自由意思에 屬한다. 그러나 大多數의 商船은豫期치 않은 災難에 對備하기 為해 保險에 加入하고 있으며 그린境遇 保險會社에서는 船級検査를 要求하게 된다. 政府検査를 받게 되는 船舶은 船級検査를 받는 船舶을 除外한 旅客船, 小型沿岸貨物船, 港灣從事船, 行政船, 醫療船 等이며, 그 中 旅客船은 人命安全에 關係되어 必히 政府検査가 要求되고 있다.

本論文 題目에서의 對比란 船舶安全法中 製造検査에 關해서 政府規程인 鋼船構造規程과 船級規則인 鋼船規則을 뜻한다. 이 두 規程의 内容을 大別한다면 船体, 機關, 帆裝, 電氣 等 實로 廣範圍하여, 그 全部를 對比한다는 것은 方大한 일에 屬한다.

本論文에서는 이 두 規程을 船体에 關해서만 對比하여 보기로 하며 그 結果가 船舶建造에 어떤 影響이 미치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2. 船体各部材치수의 對比

(i) 對比 方法

對比 方法은 船体部材치수를 算定하는 條文이 兩 規程에서 서로 같은 橫肋骨式 構造方式을 擇하기로 하여, 對象船舶은 表 1에 表示된것과 같은 普遍的인 一般貨物船으로 한다.

船体各部를 構成하는 部材치수 算定은 첫째로 船体中央部에서 行하여지며 다음이 船首尾部 그리고 上部構造物의 順으로 行하여 진다. 船体의 重要部分이라면 強度의 大部分을 負擔하고 있는 中央部 1/2間이고, 따라서 主船体의 部材치수는 船体中央 1/2間에서 가장 強하게 計算되며 船首尾部로 갑에 따라 中央部의 치수가 漸次 緩和 減少되면서 局部의 強度에 置重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規程의 對比가 船体中央部에서 行하여진다면 그 結果로서 船首尾부나 上部構造物의 對比도 大体로 짐작할 수 있다.

本論文에서는 두 規程의 對比의 煩雜性을 避하기 為하여 船首尾부나 上部構造物에 對해서는 此後로 미루기로 하고, 縱強度上 問題가 되는 船体中央部에 限해서 그 對比를 行하기로 하며, 그 結果 두 規程의 優劣을 判斷하기로 한다.

(ii) 部材치수의 算定

各 部材치수의 計算은 表 1의 例船들에 對해 두 規程을 適用 算出하되, 最終적으로는 각己 要求되는 縱強度를 滿足하는 치수로 되게 한다.

<表 1>

部材치수를 算出하기 為한 對象船舶의 主要치수

主要치수 例 船	例 船			
	A船	B船	C船	D船
全長(L_{OA})m		56.500	116.050	162.050
無線間長(L_{PP})m	31.190	52.000	107.000	150.000
型幅(B)m	6.600	10.000	18.600	22.860
型深(D)m	3.000	4.550	9.300	14.000
滿載型吃水(d)m	2.600	4.250	7.634	10.580
總噸數(噸)	194.02	496.04	5,678.27	13,057.07
船種	漁撈運搬船	一般貨物船	雜貨船	〃
船質	鋼	〃	〃	〃
構造方式	橫肋骨式	〃	〃	〃
舷口數	3	2	4	5
肋骨心距(mm)	500	550	660	760

船体構成時各部材의接合은現實情을勘案하여規程에서許容하는限度內에서熔接接合하는것을原則으로하여部材치수를決定하기로한다. 그러나肋骨이나梁等의型鋼이外板이나甲板에接合될때에는各規程에서의接合條件를그대로따르기로한다.即,鋼船構造規程에서는鉛接으로,鋼船規則에서는熔接하는것을原則으로하여型鋼部材치수를決定하기로한다.

表1의例船量에對해兩規程을適用하여主船體中央部分의各部材치수를計算한結果는表2와같다.

表2의部材치수들은最小치수의것들이고이를根據로하여一旦中央橫斷面圖가作成되었고縱強力計算이進行되었다.縱強力計算結果그림1(u)에記載된要求斷面係數에例船들의斷面係數가鋼船構造規程에依한것은C船,D船이,鋼船規則에依한것은B船,C船,D船이未達되었다.이未達되는船體中央橫斷面斷面係數를充足시키기爲하여B船에서는鋼甲板의두께를,C船에서는鋼甲板,梁上側板,第二鋼甲板 및梁上側板,上甲板 및第二甲板의甲板下縱桁,舷側厚板 및直下外板의두께를增加시켰고,D船에서도C船과같은部材에다두께를增加시켰다.이와같이두께를增加시켜例船들의central橫斷面의斷面係數를所要斷面係數에도달케한最終部材치수의對比는그림1(a)~(t)와같다.但그림1(a)의中心線桁板의두께差異가심한것은鋼船構造規程에寫하면中心線桁板과平板龍骨 또는內底板에鉛接이아니고熔接일때에두께를增加시켜야한다는條文에따랐기때문이다.

3. 對比 結果 考慮되어야 할 問題點들

그림1에依한것같으면平板龍骨,中心線桁板,內底板,船底外板,船側外板等比較的下部部材들은鋼船構造規程을適用하는것이強하고舷側厚板,直下外板,鋼甲板,甲板下縱桁等上部部材들은鋼船規則에依하는것이強하다.即,鋼船構造規程을適用하면重量이下부에置重되고鋼船規則을適用하면重量이上下부로골고루分布된다.이結果斷面係數는重量이上下부로골고루分布된鋼船規則을適用할때가훨씬增加할것이다.

그림1(u)에서는central斷面積이對比되어있는데鋼船規則을適用했을때가훨씬작다.그런데要

<表 2>

例船에對한 船體中央部各 部材치수 (單位mm)

部材名稱 規程別	例 船		A 船		B 船		C 船		D 船	
	鋼船構造規程	鋼船規則	鋼船構造規程	鋼船規則	鋼船構造規程	鋼船規則	鋼船規程	鋼船規則	鋼船規程	鋼船規則
中心線桁板(高×厚) 側桁板(厚×厚)	494×7.06 5.99	413×7.25 5.82	646×8.43 6.72	625×8.41 6.57	1,007×12.06 8.65	1,163×11.5 8.55	1,302×14.9 8.55	1,429×13.9 10.15	1,429×13.9 10.15	
實体肋板 組立肋板	5.99	5.82	6.72	6.57	8.65	8.55	10.15	10.15	10.15	
肘板(幅×厚) 正肋材(山型鋼) 副肋材(〃)	330×5.99 77×65×6 65×65×6	330×5.85 90×90×7 70×70×6	500×6.72 125×75×10 7 125×75×7 7	500×6.83 65×65×8 7 65×65×6 7	930×8.65 90×75×12 7 100×65×9 7	930×8.17 65×65×8 7 65×65×8 7	1,143×10.15 150×100×15 7 150×100×12 7	1,143×9.85 100×65×12 7 100×65×12 7	1,143×9.85 100×65×12 7	
内底板	—	—	—	—	—	—	—	—	—	
中心線板(厚×厚) 其他 (〃)	5.56 5.82	5.56 6.45×7.65	6.9 —×7.06	6.81 766×8.81	9.76 —×8.31	9.43 1,307×11.89	12.5 —×	11.89 —×	11.89 —×	
緣 板(幅×厚) 肋骨肘板(平列×曲線)	7.49×50FL	8.22×50FL	7.13×50FL	10.15×75FL	11.96×75FL	11.65×90FL	14.36×90FL	—	—	
肋 骨(船內) 〃(上甲板~第二甲板)	75×75×9 7	50×50×6 7	150×90×9 7	100×5×10 7	200×90×13 7	250×12 7	280×100×13/18 7	310×100×13/18 7	310×100×13/18 7	
〃(第二甲板~第三甲板) 梁(上甲板半梁)	100×65×7 7	65×65×6 7	150×75×7 7	75×65×6 7	200×75×10 7	150×90×9 7	180×75×8 7	100×65×12 7	100×65×12 7	
〃(第三甲板半梁) 梁下縱材(上甲板輪口側 部)桁板 (〃)面材	160×5.96 90×5.96	190×6.5 130×6.5	300×7 250×22	400×3 200×19	420×7.52 245×32	550×9.5 245×21	720×9.5 255×24	720×9.5 255×30	720×9.5 255×30	
〃(上甲板內側)桁板 (〃)面材	—	—	—	—	—	—	280×7 190×12.5	330×7.5 190×9.5	330×7.5 190×9.5	

外板	舷側厚板(幅×厚)	1,108×10.94	—	1,223×17.37	—	1,312×20.85	—	1,525×—
直下外板(〃)	6.49	9.3	8.16	14.25	11.83	18.68	15.12	
船側外板(厚)	7.5	9.3	9.3	14.5	13.67	19.18	17.68	
船底外板(〃)	7.5	9.3	—	—	—	—	—	
上甲板(幅×厚)	418×7.53	707×8.18	—	1,166×12.5	—	1,369×17	—	
第二甲板(〃)	—	—	—	1,166×12.5	—	1,369×17	—	
第三甲板(〃)	—	—	—	—	—	1,369×17	—	
平板龍骨(幅×厚)	952×8.69	1,062×9.12	1,014×11.73	1,104×11.2	1,220×18.8	1,214×16.7	1,423×24.63	1,300×21
鋼甲板	—	—	—	—	—	—	—	
上甲板(厚)	7.46	6.85	7.65	7.3	8.6	8.54	9.39	9.95
第二甲板(〃)	—	—	—	—	—	—	—	9.23
第三甲板(〃)	—	—	—	—	—	—	—	7.18
舷緣山型鋼	—	—	—	—	—	—	—	200×200×20
外板	舷側部 面材	420×7.52	550×9.5	500×10	500×22			
(〃)	面材	245×25	245×12.5	260×28	260×30			
“(第二甲板內側)板	—	—	280×7	330×7.5				
“(〃)	面材	—	—	190×9	150×7.5			
“(第三甲板繪口側部)板	—	—	—	500×10	500×22			
(〃)	面材	260×28	260×3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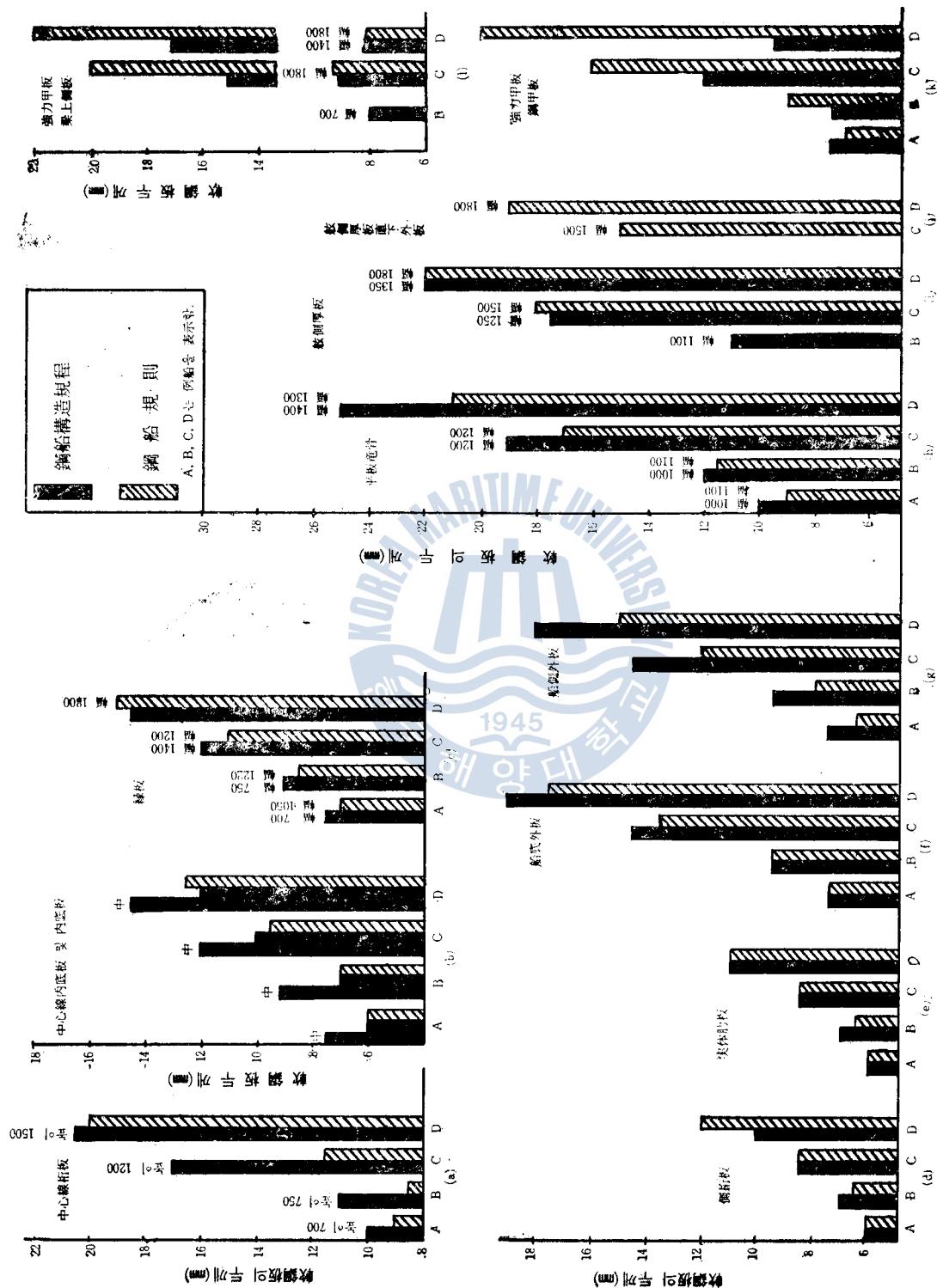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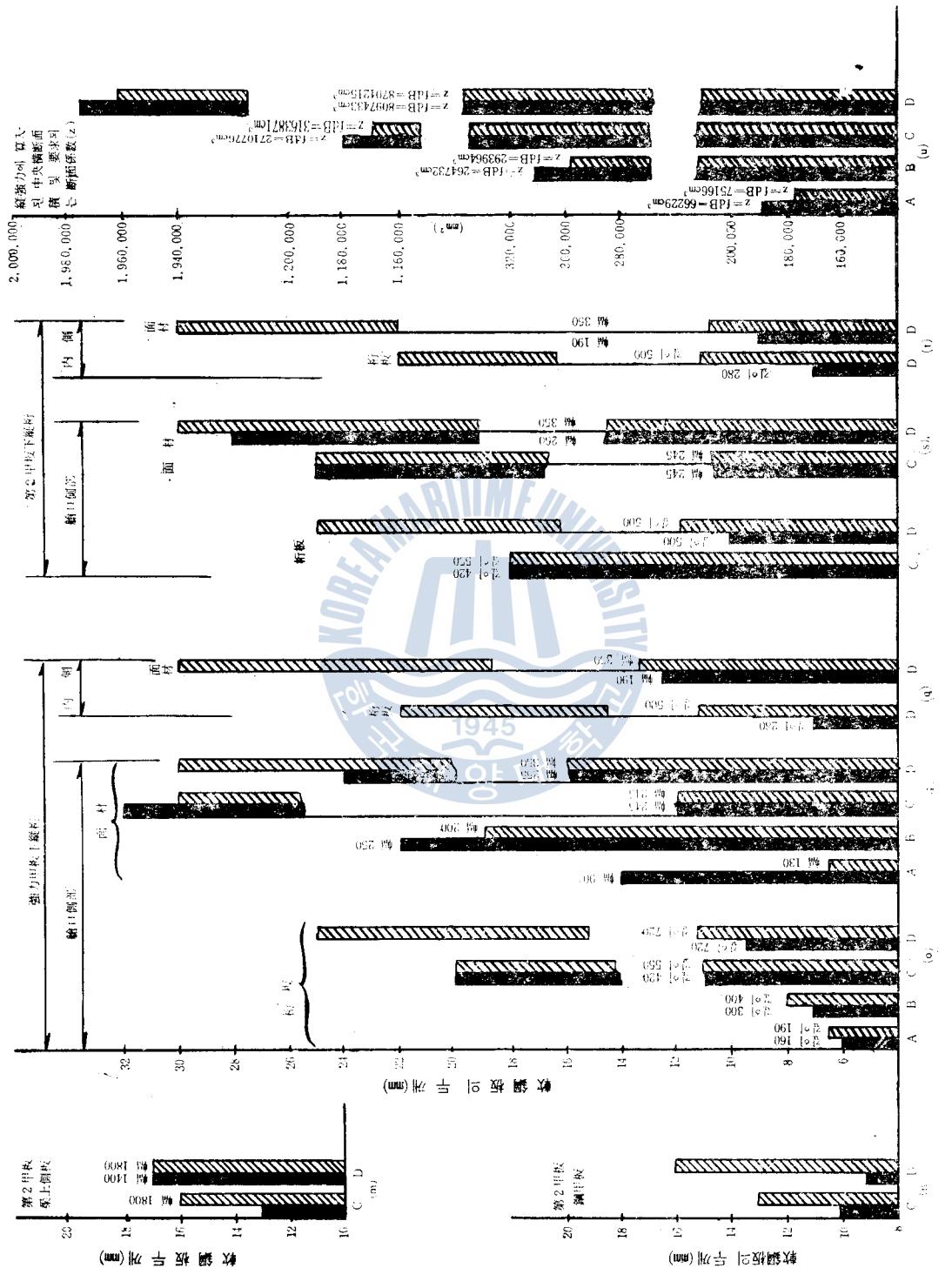


그림 1 縱強度量 滿足시키기 쪽 圖面化毛 部材크기의 對比 橫斷面積對比



求되는 斷面係數는 같은 船舶에서 鋼船規則을 適用했을 때가 크다. 이 結果는 鋼船規則을 適用하는 것이 鋼船構造規程을 適用하여 設計된 船舶보다 적은 量의 鋼材로 보다 큰 強度를 가지는 船舶이 된다는 것을 뜻 한다.

型鋼치수 算定은 鋼船構造規程에서는 鎚接을 前提로 하였고 鋼船規則에서는 逆向 熔接을 前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場所에 使用되는 型鋼은 表 2에서와 같이 鋼船構造規程을 適用하는 것이 部材 치수가 強하게 나타 난다. 이와 같은 것은 船體重量을 增加시키는 要素이기도 하며 工作上 바람직한바 못된다. 鎚接으로 算定된 型鋼을 逆向 熔接으로 代替할 뿐만 아니라, 鋼船構造規程에서는 鎚接으로 算定된 型鋼에 實船의 1肋骨心距의 鋼板을 包含한 斷面係數가 計算되어야 하고, 다음 그 斷面係數에 맞먹는 같은 鋼板을 包含한 逆向型鋼의 再計算하여야 하는 複雜性이 뒤따르게 된다.

4. 結 論

近來 建造되는 船舶에서 鎚接接合이란 船緣山型鋼 取付時 採擇되는 外에는 熔接接合이 採擇되고 있다.

船主들의 船令에 對한 思考方式이 過去와 달라졌다는 点이다. 即, 船令이 10年以上이면 그 船舶은 採算性이 히박하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事情은 船舶設計時 外板의 腐蝕餘裕에 對해 再考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1(g)에서 鋼船規則으로 算定된 船側外板 두께가 鋼船構造規程으로 算出된 두께보다 3mm나 얇게 된 것은 腐蝕餘裕을 考慮치 않은데 原因이 있다고 보아 진다.

縱強力 計算時 甲板 舷側厚板 等의 部材치수가 鋼船規則을 適用할 때 현저히 增加되고 있는 것은 船舶의 上部強度에 보다 置重하여 hogging狀態에 있어서의 縱強力 增加와 外力에 對한 抵抗인 剛性을 增加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要求되는 縱強度를 充足시키면서 鋼材重量을 減少시킨다는 것은 船價나 載貨重量인 面에서 매우 重要한 事項이다. 鋼船規則은 鋼船構造規程보다 크게 要求되는 縱強度를 鋼船構造規程 보다 적은 斷面積으로 充足시키고 있다.

鋼船構造規程에는 一般船의 縱式構造設計에 對한 部材算出 條文이 없다.

또한 鋼船構造規程에는 撒積貨物이나 鑛石運搬船 特殊液化運搬船 建造에 關한 條文이 없다.

以上과 같은 事情을勘案한다면 鋼船構造規程은 時急한 改正과 补充이 要望된다.

參 考 文 献

- 李鍾成編: 海事洋典, 安全, 船舶安全法, 世文社, 서울, (1974. 12. 31)
- 〃 : 〃, 安全, 鋼船構造規程, 世文社, 서울, (1962. 4. 3)
- 한국선급협회, 선급 및 강선규칙, 삼성인쇄, 서울, (1977)